

목포시 체육회 상품교환권 배포에 따른 목포시의회 입장

지난 9월 27일, 목포시생활체육회에서 목포시의회 21명의 의원들에게 상품교환권을 배포한 사실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바,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상품교환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 목포시체육회로부터 각 시의원들의 방에 배부되었습니다. 언론사의 보도처럼 의원들이 직접 상품교환권을 건네받은 상황은 없었으며, 상품교환권을 건네받은 시 의원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금품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10월 21일, 시 체육회에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품교환권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배부되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본부 임원으로서 참가한 시의원들에게 상품교환권이 지급되었으므로 선거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법 저촉 여부를 떠나 이유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법 이해의 부족으로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집행부의 안이한 법해석과 사려 깊지 못한 상품 교환권 지급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한 시정이 이뤄지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16. 10. 26.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